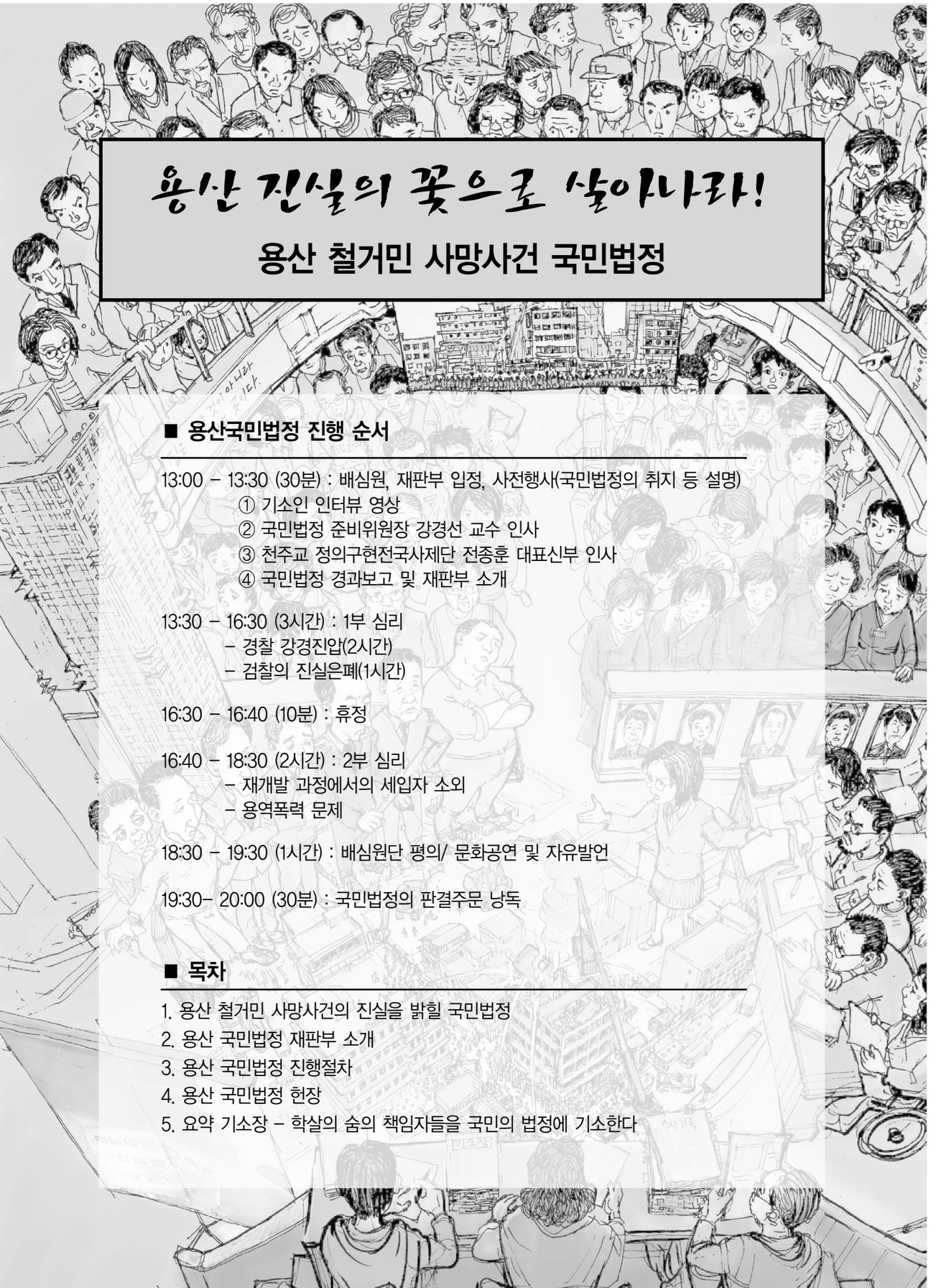

용산 진실의 꽃으로 살아나라!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 용산국민법정 진행 순서

13:00 – 13:30 (30분) : 배심원, 재판부 입정, 사전행사(국민법정의 취지 등 설명)
① 기소인 인터뷰 영상
② 국민법정 준비위원장 강경선 교수 인사
③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종훈 대표신부 인사
④ 국민법정 경과보고 및 재판부 소개

13:30 – 16:30 (3시간) : 1부 심리
– 경찰 강경진압(2시간)
– 검찰의 진실은폐(1시간)

16:30 – 16:40 (10분) : 휴정

16:40 – 18:30 (2시간) : 2부 심리
– 재개발 과정에서의 세입자 소외
– 용역폭력 문제

18:30 – 19:30 (1시간) : 배심원단 평의/ 문화공연 및 자유발언

19:30– 20:00 (30분) : 국민법정의 판결주문 낭독

■ 목차

1.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힐 국민법정
2. 용산 국민법정 재판부 소개
3. 용산 국민법정 진행절차
4. 용산 국민법정 헌장
5. 요약 기소장 – 학살의 숨의 책임자들을 국민의 법정에 기소한다

용산, 진실의 꽃으로 살아나라!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힐 국민법정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준비위원회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은?

2009년 1월 20일,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이 발생한 날입니다. 이 사건으로 5명의 철거민과 경찰 1명이 사망했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용산철거민 사망사건이 발생한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아래 용산4구역)' 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신용산역과 용산역에 위치한 역세권이며 주거지와 상권이 발달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다른 재개발 지역에서처럼 상가 세입자들은 철거 용역들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3개월의 영업손실보상비만 받고 떠나가야 했습니다. 권리금이나 시설투자비 등 상가를 임대하고 운영하는데 들었던 비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무시되므로 상가를 통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던 이들이 재개발을 맞게 되면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몰락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거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생존권을 주장하는 투쟁을 전개하게 되며, 용산4구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거용역들의 폭력에 맞서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투쟁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용산4구역도 무법천지의 상황이 되었고, 늘 그랬듯이 철거용역들의 폭력에 경찰이나 검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산4구역의 철거민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올라가 싸우면서 협상을 통해 '임대상가와 임시상가' 의 보장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망루를 짓고 올랐던 게 1월 19일이었습니다. 보통 망루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경찰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주선하고는 하며, 망루에 대한 진압은 몇 개월이나 지나고서야 단행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용산4구역에서는 달랐습니다. 철거민들이 망루를 짓고 농성에 들어간 바로 그날 즉시 경찰은 특공대 투입을 통한 강제진압 계획을 수립하고, 1월 20일 새벽에 돌입합니다. 겨울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방에서 물대포로 공격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올려서 망루를 부수려 했으며, 철거용역들과 합동으로 건물에 진압한 특공대는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며 망루 농성 철거민들을 강제연행해 갔습니다.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진압, 유류물질이 유출되어 언제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유증기 상태였던 위험한 상황은 깡그리 무시되었고, 1차 화재가 발생한 뒤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밀어붙이다가 결국 대형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몇 명은 극적인 탈출을 했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어야 했지만, 6명은 결국 죽어서 망루를 내려왔습니다.

▶ 왜 국민법정을 세우게 되었나?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검찰은 대규모 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강제부검을 단행하고, 모든 혐의를 철거민들에게만 뒤집어씌우는 편파수사, 경찰 지휘부와 철거용역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은폐?왜곡수사를 하고는 2월 9일 망루 농성 철거민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망루에서 극적인 탈출을 한 생존자인 철거민 6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철거용역 직원들 7명은 불구속 기소했고, 경찰에 대해서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하여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그런 뒤에도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을 무산시키더니 철거민들의 재판에서 수사기록 3천여 쪽을 제출하지 않아서 재판이 파행에 이르게 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기소독점권을 장악하고 있는 검찰이 기소한 철거민들의 범죄혐의만 다룰 뿐입니다. 공권력을 투입해서 사람을 죽게 했던 경찰과 진실을 은폐한 검찰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국가 공권력이 살인진압을 하도록 지시한 책임자들은 뒤로 숨어 모습을 감추었고, 재개발 정책을 통해서 살인적인 재개발을 재촉했던 정부와 서울시, 용산구청의 책임자들, 그리고 건설 시공사 등은 아예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에게 그것을 기대할 수도 없으며, 철거민들을 도심 테러리스트라고 매도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장악한 국회에서 특별검사제 도입 특별법이 제정되기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은 검찰이 외면하고, 검찰 권력 뒤에 숨어 버린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주권자인 국민들이 세우는 법정입니다. 이미 2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기소인으로 참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책임자들인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천성관 서울검찰청장, 박장규 용산구청장,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철거용역업체 책임자 등 20명의 피고인에게 소환장과 기소장을 발송했습니다.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 9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했고, 50명의 배심원을 선정했습니다. 국민법정은 '시민재판' 이나 '민중재판' 처럼 국민들이 직접 법정을 세우고, 형사재판절차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법정입니다. 사법권력이 외면한 진실을 찾고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진행하는 재판입니다.

▶ 국가폭력과 재개발정책의 문제점까지 짚는 국민법정

국민법정에서 강제진압은 누구에 의해서 지시되었고, 실제 실행의 책임은 누구인지, 용산참사 이후에 누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있는지를 따지려고 합니다. 나아가 살인적인 재개발 정책의 문제점도 짚어내려고 합니다. 솔직히 잘못을 시인하고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죽게 한 원인을 제거하고, 고인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정의이며, 법정임에도 상황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산참사로 인한 국가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국민들이 나서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이 주체가 되어서 기소하고,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평결하고, 판결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런 국민법정의 재판을 통해서 법적인 권한이 있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행하는 재판과 비교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민법정은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지만 그중에서도 국민참여재판 방식과 절차를 따라서 진행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제가 중심입니다. 배심원제에서는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결정하면 그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평결은 하지만 권고 수준일 뿐입니다. 하지만 국민법정에서는 정확하게 배심원제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250명의 신청자를 모아서 장애,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50명의 배심원을 선정하였고, 예비 배심원과 배심원 후보가 선정했습니다.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배심원들을 추첨하였기 때문에 실제 국민법정의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는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소하였지만 기소된 피고인들이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소인 측 대리인과 피고인 측 변호사들이 서로 증거를 대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면서 사건의 실체를 발견해가는 심리과정, 배심원단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평결을 내리는 과정, 사회각계 대표로 구성

된 9명의 재판부가 진행하는 재판과정은 재판을 멀게 느끼는 많은 이들에게 그 자체로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헌법과 실정법만이 아니라 국제인권조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까지 적용하여 유무죄를 다투게 되므로 생존권과 주거권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 국제적인 인권기준이 모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준엄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물론 국민법정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법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내린 판결이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검찰의 기소와 사법부의 재판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들을 분명히 드러내고 2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직접 기소하고 참여한 이 재판의 결론은 용산참사에 대한 국민여론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준엄한 공론의 장을 통해서 형성된 여론이 존중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법정 준비위원회에서는 재판이 끝난 뒤에 평결 및 판결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고, 피고인들에게도 전달하고, 국회와 사법부에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국민법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상식, "누구에게나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엄연한 진실을 오히려 가로막는 국가기구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기에 국민이 나서 용산철거민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10월 18일 오후 1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역사적인 국민법정이 개정됩니다. 용산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의를 세우기 위해 국민법정에 참여합시다.

국민법정 준비위 홈페이지 mbout.jinbo.net/court

국민법정 재판부 소개

■ 용산 국민법정 재판부

박 연 철 (재판장) – 변호사, 前 대한변협 인권이사
고정 갑 희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페미니즘 학교 집행위원장
권 수 정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조합원
김 승 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유 진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아수나로 회원
김 흥 현 – 前 전국빈민연합 의장
박 명 애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한 도 숙 –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홍 세 화 – 언론인, 〈한겨레〉 기획위원

■ 용산 국민법정 기소대리인, 피고변호인

• 기소대리인

이 호 중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 지 영 – 변호사
최은아, 호연, 미류 –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피고변호인

이 재 정 – 변호사
박 주 민 – 변호사

국민법정 진행절차 안내

■ **13:00 – 13:30 (30분) : 배심원, 재판부 입정, 사전행사**

(국민법정의 취지 등 설명)

① 기소인 인터뷰 영상

② 국민법정 준비위원장 강경선 교수 인사

③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종훈 대표신부 인사

④ 국민법정 경과보고 및 재판부 소개

■ **13:30 – 16:30 (3시간) : 1부 심리**

– 경찰 강경진압(2시간)

– 검찰의 진실은폐(1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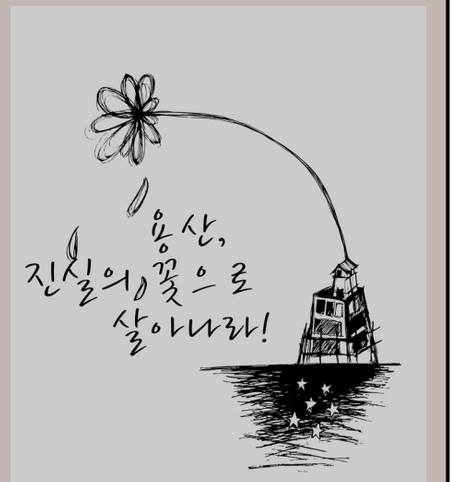

■ **16:30 – 16:40 (10분) : 휴정**

■ **16:40 – 18:30 (2시간) : 2부 심리**

– 재개발 과정에서의 세입자 소외

– 용역폭력 문제

■ **18:30 – 19:30 (1시간) : 배심원단 평의/ 문화공연 및 자유발언**

■ **19:30– 20:00 (30분) : 국민법정의 판결주문 낭독**

〈심리 과정〉

국민법정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국민법정의 검찰 역할을 하는 기소인 측 대리인들이 기소요지를 설명하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을 대리하여 모두진술을 하게 됩니다. 법정에서 쌍방의 공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재판부에 쌍방은 서증자료나 영상자료 등의 증거들을 제출하고 증인들을 신청합니다. 증거목록 제출이나 증인 신청을 하는 증거개시절차는 이미 국민법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쌍방은 각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배심원과 재판부를 설득하게 됩니다. 증인에 대한 신문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증인석에 증인이 나오면 증인선서를 하고, 증인에 대한 기소인 측 대리인의 신문과 피고인 측 대리인의 반대신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 판사들도 증인을 상대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절차를 모두 마치게 되면 1부, 2부 각각 결심과정을 밟게 되는데, 기소인 측 대리인은 피고들의 유죄를 주장하며 구형을 하게 되고, 피고인 측 변호사들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최후변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배심원 평결 과정〉

처음부터 재판과정을 지켜본 배심원들은 다른 사람과 일체 대화를 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생각만 잘 정리하고 있으면 됩니다. 1부와 2부 심리를 모두 마친 다음에 배심원들은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평결에 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토론은 분임토의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배심원단 대표는 배심원들의 분임토의 결과를 집약해서 법정에서 이를 발표하게 됩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들의 의견분포를 보여주는 것이며, 형량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배심원들이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분포를 전달하면 재판부는 이에 기속되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

배심원들의 평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법정에서는 문화공연과 함께 방청객들의 자유토론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발언할 방청객들은 자유발언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법정에서 진행되는 재판의 전 과정은 인터넷 생중계가 되고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달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배심원들의 의견을 전달받은 9명의 재판부는 협의과정을 거쳐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판결문을 작성할 시간이 없으므로 국민법정 당일에는 판결 주문, 주문처럼 판결하게 된 이유만을 법정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국민법정 이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판결문을 완성하여 국민법정 준비위원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판결문을 전달받은 국민법정 준비위원회는 이를 기자회견 방식을 통해서 언론에 발표하고, 이를 정부, 국회 등 관련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에 발송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까지 거치면 국민법정은 모든 절차를 종료하게 되며, 준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헌장

- 전 문

2009년 1월 20일 발생한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으로 무고한 시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생명을 잃었고, 수십 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검찰은 2009년 2월 9일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철거민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치상 등의 혐의로 21명을 기소하였다. 반면 강제진압에 나섰던 경찰에 대해서는 '정당한 공무집행' 이라며 무혐의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서 생존권을 주장하며 망루 농성을 하던 철거민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경찰관 1명의 죽음에 대해서만 사법처리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맞고 있으며, 현재 기소된 철거민들 중 구속자 6명과 불구속자 3명에 대한 1심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정에서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해서 철거민들의 불법행위의 책임만 물을 뿐 강제진압을 결정하고 투입된 공권력의 책임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상황이다.

지금 검찰이 기소해서 진행되는 법원의 재판과는 별도로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강제진압은 누구에 의해서 지시되었고, 실제 실행의 책임은 누구이며,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이후에 누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서 살인적인 재개발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내며 생존권과 주거권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실종된 정의를 다시 세우고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대의제민주주의에 의해서 법원에 위탁했던 사법권의 심판과 달리, 주권자인 국민 스스로가 사법권을 직접 행사하는 국민법정을 세워, 이 사회에 진실과 정의를 밝혀 드러내고자 하여 2009년 9월 18일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헌장' 을 채택한다.

제1조(국민법정의 설치)

이 헌장 전문의 취지에 따라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이하 '국민법정')을 설치한다.

제2조(재판의 관할)

국민법정은 2009년 1월 20일 발생한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에서 강제진압을 지시하고, 실제 실행하고, 그 이후 이를 은폐한 사실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개인, 집단 및 공동체를 그들이 점유 또는 의존해 살아가던 집, 토지, 공동자산으로부터 비자발적인 이주를 강제해 그들의 거주권이나 일할 기회와 능력을 빼앗는 강제퇴거행위에 대해서도 심판한다.

제3조(국민법정의 구성)

① 법정은 기소인단, 피고 또는 피고 대리인단, 재판부, 배심원단, 서기로 구성한다.
② 기소인단은 전국적으로 국민법정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들로 구성한다.
③ 재판부는 국민법정의 취지에 찬동하면서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9인 이내의 사람들로 구성한다.

④ 배심원은 배심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250인을 모집하여 그 중에서 무작위로 50인을 뽑아 구성한다.

제4조(기소인단)

①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과 관련하여 강제진압이나 강제퇴거에 대한 책임 있는 자를 기소하기 위한 기소인을 모집한다.
② 기소인은 전국에 걸쳐 1만 명을 목표로 모집한다. 모집방법은 거리 캠페인을 통하여 직접 참여케 하거나, 온라인을 통하여 기소장 작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기소인으로 참여한 사람들로 기소인단을 구성한다.

제5조(재판부)

① 재판부는 법률전문가,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9명 이내의 사람들로 구성한다.
② 재판부는 국민법정의 사건을 진행하고, 심리하며, 심판한다.

제6조(배심원단, 평결의 구속력)

① 배심원의 5배수(250명)를 신청 받아 그 중 50명을 선발한다. 단, 배심원 신청자가 미달할 때에는 재판부의 결정으로 배심원 총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배심원은 성, 장애,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공개선발을 한다.
③ 배심원단의 구성, 활동, 평결 방식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되 그에 구속되지 않고 본래적 의미의 배심제 원리에 따른다.
④ 판결은 배심원의 평결에 구속된다.

제7조(서기)

① 국민법정의 진행상황을 기록하고, 사무를 돕기 위하여 서기를 둔다.
② 서기의 수는 약간 명으로 한다.

제8조(재판진행)

① 국민법정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며,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② 법정에서의 공식 언어는 한글이다.

제9조(절차와 증거에 관한 규칙)

① 재판부는 절차, 신청된 증거에 대한 조사 실시 여부와 증거의 채택, 증인보호, 기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
②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증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증 : 공문서, 사문서, 진술서, 진술조서, 서명된 성명서, 일기, 편지, 메모 등 서면으로 된 증거와 기타 각 언론사의 기사, 보도문 등 문서, 사진 기타의 시각자료

2. 증인 : 피해자, 관련자, 전문가의 진술 또는 의견

3. 기타 관련된 물리적, 물질적 증거

제10조(당사자의 대등성)

① 국민법정은 피고인이 출석하여 구두로 진술하고, 직접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보장한다.

② 피고인이 직접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선정한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선정한 변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방어하고 변호할 권리를 보장한다.

제11조(판결)

① 배심원단은 유무죄 여부에 대하여 다수결로 평결한다.

② 판결은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공개적으로 국민법정에서 선고한다.

③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유무죄 여부 및 그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강제진압 및 진실 은폐에 대한 국가의 책임표명
2. 살인적인 재개발 정책의 전환을 통한 생존권 및 주거권의 보호
3. 배상과 피해자 명예회복조치
4. 기타 국민법정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적절한 조치

⑤ 판결문의 사본을 각 언론기관 및 사회단체 등에 배포한다.

제12조(적용법)

국민법정은 대한민국헌법을 비롯한 국내법을 적용한다. 또한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국제연합의 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법을 직접 적용한다.

천성관 당시 서울지검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명박** 대통령 **박장규** 용산구청장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

기소장 요약본

- 학살의 숨은 책임자들을 국민의 법정에 기소한다 -

■ 1부 – 살인 진압과 진실 은폐의 책임을 묻는다

– 피고인

1.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2. 김수정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3. 신두호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
4. 이송범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
5. 백동산 (당시 용산경찰서장)
6. 박삼복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직속 경찰특공대장)
7. 이명박 (대통령)

1. 피고인 김석기, 김수정, 신두호, 이송범, 백동산, 박삼복은 2009.1.19. 주거권과 생존권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할 위기에 몰린 세입자 등이 서울 용산구 한강로 남일당 건물에서 망루를 쌓으면서 농성을 시작하자, 하루만인 2009.1.20. 곧바로 강제진압에 돌입하였다. 반인권적인 재개발에 대하여 자신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최후의 의사표현이자 주변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은 농성에 대해 피고인들이 경찰이 준수해야 할 인권기준과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공권력을 위법하게 행사한 혐의에 대하여 공무원의 폭행?가혹행위죄로 기소한다.

1. 또한 피고인들은 망루 안에 인화물질 등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 무리하게 강제진압을 시도할 경우 화재의 발생으로 철거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발생할 수 있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강제진압을 시도함으로써 철거민 5명을 죽이고 농성 중이던 다수를 다치게 했으므로 살인죄 및 상해죄로 기소한다.

1. 피고인 이명박은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만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경기를 부양한다는 명분 하에 재개발정책을 밀어붙임으로써 철거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국정의 최고권력자이면서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추진은 경찰 등 하위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부가 추진하는 재개발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에만 몰두하게 만들었다. 또한 피고인은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법과 질서의 준수' 가 선진화의 시작임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집단적 의사표시를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사라져야 할 '떼법' 으로 비하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재개발에 저항하는 철거민들의 투쟁을 조기에 진압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피고인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임은 자

명하다. 상명하복관계에 있는 경찰공무원에게 강제진압을 부추긴 피고인은 불법적인 강제진압에 대하여 교사의 책임을 져야만 한다.

– 피고인

1. 천성관(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2. 정병두(당시 특별수사본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
3. 조은석(당시 특별수사본부 수사총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
4. 안상돈(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 피고인 천성관, 정병두, 조은석은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정하게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권을 남용하여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의 진실을 은폐했다. 피고인들은 경찰특공대의 진압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경찰 간부들에 대한 본격 수사가 착수되기도 전에 이미 경찰의 진압작전을 '적법한 공무수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피고인들은 경찰 진압의 위법성이나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언론이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물증을 제시하면 그때에서야 마지못해 수사에 나서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수사권이라는 미명하에 법제도의 최대 피해 집단인 철거민들에게는 철퇴를 가하는 불공정성과 편파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한편, 이례적인 과잉진압으로 대형 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진압 경찰이나 이에 동원된 용역업체의 불법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으로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1. 피고인 정병두는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한 2009.1.21.경부터 매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자실에서 중간 수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피고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과 공판청구 전 피의사실의 공표를 금지하는 형법을 어기고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 없이 화재원인이 철거민들의 화염병 때문이라고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피의사실 공표죄를 범했다.

1. 피고인 천성관과 안상돈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 검사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법원의 열람등사허용결정마저 어기고 수사기록 약 3000쪽의 공개를 거부했다. 검사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철거민들의 실질적인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하고, 철거민들의 형사 사건에 관한 중요한 증거를 은닉한 피고인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증거은닉죄로 기소한다.

2부 – 강제퇴거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 피고인

1. 이명박(대통령)
2. 오세훈(서울시장)
3. 박장규(용산구청장)
4. 이춘우(용산4구역 조합장)
5. 시공사
   5.1 윤석만(포스코건설 회장)
   5.2 김종인(대림산업 대표이사)
   5.3 이상대(삼성물산 대표이사)
6. 용역업체
   6.1 박기찬(현암건설산업 대표이사)
   6.2 김성용(호람건설 대표자)
   6.3 이기호(호람건설 대표자)

Ⅰ.기소 요지

1. 기소인단은 피고인 이명박 대통령 외 10인을 용산국민법정 헌장 12조(적용법)에 따라 강제퇴거를 방조하고 주거권 및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강제퇴거죄'로 기소한다.

2. 피고인 대통령 이명박, 서울시장 오세훈, 용산구청장 박장규는 주거관련법, 정책 등 주거에 관한 모든 조치들이 헌법과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법이 부과하는 의무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첫째, 세입자 대책이 충분한 재정착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지 않았고 둘째, 강제퇴거 과정에서 주민이 보호받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와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지 않았다.

3. 피고인 용산4구역 조합, 시공사, 용역업체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헌법과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과도한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재산과 자본 위력에 기대어 주민들을 강제로 내쫓아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

Ⅱ.기소 사실

1. 용산4구역 세입자들은 비자발적으로 이주했다. 세입자들은 수 년에서 수십 년을 점유하고

서도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강요당했다. 세입자는 집 · 상가주인과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주인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

2. 용산4구역 세입자들은 여러 방식으로 내쫓김을 경험했다. 집주인은 세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나가라고 할 때는 지체 없이 나가라는 서약을 강요하기도 했다.

3. 조합 또는 집주인이 법원에 명도소송을 하는 경우에 세입자들은 아무런 준비 기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4. 용역업체 직원들은 2008년경부터 용산4구역에 상주하면서 폭행과 협박, 영업방해, 성희롱 등을 자행하여 용산4구역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로 인해 용산4구역 세입자들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점유의 안정성에 대한 계속된 위협을 느꼈다.

5. 세입자들에 대한 용역업체 직원들의 폭력 행위는 세입자와 철거용역업체 양자 간의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 철거 용역업체들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시공사가 있다. 개발 이익을 둘러싸고 구성된 개발조합-철거 용역업체-시공사의 '삼각동맹'이 폭력을 동반한 퇴거 방식을 묵인하고 조장하면서, 세입자들의 이주를 강제했다.

6.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은 용산4구역에서 강제퇴거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개입하지 않았다.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은 강제퇴거로부터 거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할 위치에 있으나 사실상 집주인, 조합, 시공사, 용역업체에 의해 일어나는 강제퇴거를 묵인했다.

7.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제퇴거를 금지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박장규 용산구청장은 세입자의 정보접근권과 지속적으로 생활을 개선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조합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8. 조합은 주거세입자들에게 보장된 임대주택 입주권,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내용에 관해 거짓정보를 유포해 세입자들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했다.

9. 조합은 상가세입자들에게 보장된 이주대책으로 3개월분의 영업손실보상금만을 보상하고 있지만, 세입자에게는 매우 미흡했다. 현재 세입자들에게 제공되는 세입자대책이나 보상으로는 인근 지역에서 비슷한 조건의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세입자들은 대개의 경우 생활수준이 내려갔다.

10.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박장규 용산구청장은 강제퇴거로 인해 세입자들이 주거와 생계의 하향이동을 경험할 것을 알면서도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았다.

MEMO